통합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계약서

2011. 3.2

&



㈜ 아토



㈜베스트웨이코리아

계 약 서

委託者(갑) 주 소: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업 체 명:㈜아토

대표이사:이 문 용

施行者(을)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대우메종빌 404호

업 체 명: ㈜ 베스트웨이코리아

대 표:한승규

제1조 계약의 취지

委託者 (주)아토(이하"갑"이라 칭함)과 施行者 ㈜베스트웨이코리아(이하 "을" 이라 칭함)는다음 각 사항과 같이 "갑"의 통합경영시스템(ISO 9001, ISO 14001, IOS 27001 & KOSHA 18001) 구축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을"이 "갑"에게 제출한 통합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을 위해 사전 제출한 "컨설팅 제안서" 內 추진계획을 시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주제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 시스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통합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주제로 한다.

제4조 진단 지도의 범위

- 1. "갑"의 현 시스템(ISO 9001, 14001, 27001 & KOSHA 18001)의 진단 및 통합 구축
- 2. Solar 사업부 통합시스템 신규 구축
- 3. 통합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제5조 지도의 방법

"을"이 지정하는 전문위원이 기업진단을 실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계획에 의거한 현업확인, 교육, 작업지도, 개선지시, 이행 등으로 실시한다.

제6조 지도에 따른 교육

교육이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이 지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합의에 의해 집합교육을 실시 할 수도 있다. (교육장소는 상호 협의)





제7조 인증을 위한 상호 의무

"을"은 교육, 추진 팀 지도, 인증심사에서의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등 통합 인증취득 시까지 지도하며 "갑"은 인증취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경영층의 지원, 각부서의 적극적인참여, 추진 팀의 인사조치 등 최대한 지원을 한다.

제8조 지도 프로젝트팀의 구성

"갑"의 프로젝트 구성원 약간 명과 "을"이 파견한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지도장소

"갑"의 본사 관련부서 및 현장(사업장)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 지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기간

2011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향후 10년간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상호간에 정보공개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공업소유권

"을"이 지도기간 중에 지도와 관련하여 개발한 기술의 공업소유권 및 제한은 "갑"에 귀속 된다.

제13조 지도비용

- 1. 지도비용은 일금 삼천육백만원(₩36,000,000원/45M/D)으로 한다.
- 2. 출장비용은 일금 이백이십오만원(₩2,250,000원/45M/D)으로 한다.(계약 총금액 : 삼천팔백이십오만원(₩38,250,000원))
- 3. 지도비용 및 출장비용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14조 비용의 지불

- 1. "갑"은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12,000,000원과 출장비용 ₩2,250,000원 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문서화 및 기본교육 완료 후 ₩12,000,000원, 인증취득 후 잔금 ₩12,000,000원)을 "을"에게 지불하며,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단, 인증취득이란 본 심사 통과를 의미한다)
- 2. 모든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한다.
- 3. ISO 및 KOSHA 인증 심사비용은 별도로 인증기관에 지불한다.(인증심사 신청 시)





제15조 불가항력

본 계약이 사고나 전쟁, 천재지변, 폐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16조 계약서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갑"의 주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로 한다.

제17조 신뢰, 성실 및 상호 협조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서의 보관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3월 2일

委託者(갑)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업 체 명:㈜아토

대표이사:이 문 용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대우메종빌 404호

업 체 명 : ㈜ 베스트웨이코리아

대표이사: 한 승 규



施行者(을) 주



